

I. 개 요

1. 일시 : 2011. 07. 05. (16:00~18:00)
2. 장소 : KIEP 8층 회의실
3. 발표자 : 박순철 한국탄소금융 수석연구원
4. 참석자

김주진(김앤장, 변호사)
오인하(에너지경제연구원, 부연구위원)
도건우(삼성경제연구소, 수석연구원)
김정곤(KIEP, 전문연구원)
금혜윤(KIEP, 전문연구원)
박혜리(KIEP, 전문연구원)
주진홍(KIEP, 전문연구원)
서정민(KIEP, 부연구위원)

4. 제 목

-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개발 현황과 쟁점

II. 주요 논의 사항

1) 발제내용

□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법안과 EU-ETS

-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는 현재 EU-ETS를 벤치마크하여 구축 중에 있음.
- 대체로 유사하나, 참여대상이 EU는 installation으로, 우리나라는 관리업체로 정하여져 있어, 향후 '관리업체'에 대한 정의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.
- 현재 우리나라 1차 계획기간의 종료시점에 대한 언급이 법안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,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017년까지로 예상함.

□ EU ETS 배출권 가격동향과 원인

- 발전부문과 비발전부문 간 초기할당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, 발전부문은 배출권 순구매자, 비발전부문은 순판매자로 구분되어 있음.
- 즉, 발전부문이 비용을 부담하여 비발전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임.
- EU-ETS phase3에서 CER에 대한 제약이 강화여짐에 따라, 현재 EUR의 초과공급에도 불구하고, EUR submission 대신 hold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- CER 상품은 Green CER과 Standard CER로 이원화되어 거래되고 있는 추세이며, Standard CER은 Phase3에서 사용제한된 사업(주로 N2O와 HFC23 관련)에서 발생된 CER이며, Green CER만 Phase3에서 submission이 허용될 예정임.
- 사용제한이 예정된 standard CER은 현재 CER 사업의 약 84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 중 우리나라는 올산화화(HFC23)과 로디아 온산(아디핀산 N2O)을 중심으로 약 15%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임.

□ 국내 ETS 법안 시행령 개발 이슈

- 1차 기간동안 최대 3년간 closed market으로 진행되어 투기자 (brokers)를 제한할 예정임.
- 문제는 향후 투기자의 참여를 허용할 때 국내투기자만을 허용할 것인지 해외투기자도 허용할지 쟁점으로 남을 수 있음.
- 할당업체지정에 대해 대상업체가 구두상으로는 연간 25,000CO₂t 이상 배출기업이지만, 법제화과정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.
- 상쇄와 관련하여 일본과 유사하게 주로 domestic offset에 대한 고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, 신재생에너지와 폐기물 등에 대한 offset을 고려 중임.
- 이러한 상쇄인증 기관이 통합되어 한 부처나 기관이 관리할지, 목표 관리제와 유사하게 부처별로 분리되어 관리될지 남은 쟁점임.

2) 토론 내용

□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

- 목표관리제는 거래제에 비해, cap은 있으나 trade가 없어 이론적으로 비용효과적이지 않음.
- 하지만, 실제 거래제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고려할 때 비용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.
- 특히, trade을 위한 할당에 합리적임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며, 비합리적 할당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목표관리제에서는 해당기업에만 한정되나, trade에서는 전체 대상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

이 있음.

- 배출권거래제가 실제운영상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이론적인 비용효과성에 불구하고 회의적 견해가 있으나, 이 제도를 통하여 감축과 관련한 인적·기술적·제도적 인프라의 확산이라는 효과가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임.

□ 거래소 설립관련

- 세계 최대규모 현물거래소인 Bluenext에서도 하루 거래량이 70,000CO₂t에 불과함. 거래단위가 1,000CO₂t임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매우 적은 편임.
- 우리나라의 향후 배출권 규모를 생각해보면, 과연 거래소 설립이 유용한지에 대해 비판적일 수 있음.

□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할당업체 지정관련

- 가령, 두산그룹 전체의 배출량은 10,000CO₂t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있어, 몇몇 특정기업에만 부담이 집중될 수 있음.

□ 상쇄관련

- 상쇄 관리부처 선정과 관련한 이슈가 EU-ETS는 우리나라와 같지 않음. 왜냐하면, EU에서 상쇄는 UN EB가 인정하는 CER 및 ERU만을 인정하기 때문임.